

에드먼턴 한인회 회칙

By-Laws of the Edmonton Korean Canadian Association

에드먼턴 한인회

BY-LAWS

THE EDMONTON KOREAN CANADIAN ASSOCIATION

FEB 9, 2020

제 1 장 총칙: 명칭과 본회의 성격

- 제 1 조 명칭: 본회는 "에드먼턴한인회(The Edmonton Korean Canadian Association)"라 칭한다.
- 제 2 조 단체의 성격: 본회는 알버타 주 사회단체법(Societies Act)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법인이다.
- 제 3 조 목적: 본회는 에드먼턴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자, 한인동포의 권익 옹호를 위한 봉사단체로서, 동포사회의 건전한 단합, 복지증진 및 발전을 도모하며, 한국과 캐나다 간의 문화교류와 상호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4 조 본회는 집행부, 이사회, 총회의 기본 기구에 의하여 운영된다.
- 제 5 조 소재지: 본회의 사무실은 에드먼턴시에 두며 에드먼턴을 중심으로 운영된다.

제 2 장 총칙: 회원

- 제 6 조 회원의 자격
정회원: 에드먼턴시와 북부 알버타에 영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인 한인 교민
준회원: 에드먼턴시와 북부 알버타에서 공부하는 만 18세 이상의 유학생, 일시 거주하는 한인 및 한국인과 결혼한 비한국인
- 제 7 조 회원의 의무:
7-1 회원은 책정된 회계연도 (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)의 회비를 9월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9월30일 이후에 납부되는 회비는 다음 해 회비로 처리되어 차기 회계연도 즉, 다음 해 1월 1일부터 아래 8조 1항에 기술된 회원의 모든 권리가 주어진다.
7-2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가 행하는 행사와 봉사활동에 적극 협력 참여하여야 한다.
- 제 8 조 회원의 권리:
위 7-1조에 의거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회비를 9월 30일까지 납부한 회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본회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즉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그 외 본회가 베푸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단,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

다.

제 9 조

회원의 가입과 탈퇴:

9-1 가입: 제6조 및 7-1에 의거하여 회원의 조건이 구비된 사람은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 함으로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.

9-2 탈퇴: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서를 작성 서명하여 한인회 사무국에 제출한 즉시 본회원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.

제 10 조

회원의 징계

10-1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
가. 한인회의 발전을 방해하며 회칙을 의도적으로 준수하지 않을 때

나. 한인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진행, 업무수행 혹은 어떤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협조 대신 이를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

다. 어떠한 방법과 행위로든지 한인회나 한인사회에 도의적이나 물질적 혹은 법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.

10-2 '10-1 항'에 의하여 자격을 박탈할 조건이 성립될 경우 이사회는 해당 본인에게 그 사유를 적어도 박탈 결의 14일 전에 통고해야 한다. 통고 방법은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전달해야 한다.

10-3 해당 본인은 이의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나와 제한된 시간 동안 직접 사실을 해명할 수 있다. 이 결정을 위한 이사회의 정족수는 이사 2/3의 참석과 참석인원 2/3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, 본인에게 통고하고 신문을 통하여 회원에게 공고한다.

10-4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과 부회장의 탄핵 절차도 이상 10-2 와 10-3항의 절차과 동일하나 단 이사회의 제청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에서 회원 200명 이상 혹은 회원 30%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/3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제 3 장 집행부

제 11 조

11-1 집행부의 임무: 본회의 회칙 규정에 따라 본회의 운영, 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본회에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.

11-2 부서(팀): 회장은 본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만들고 부서장(팀장)을 임명한다.

11-3 팀장의 임무: 회장이 부여하는 임무를 관할, 수행한다.

제 12 조

사무국

12-1 사무국의 임무: 본회의 모든 일상 사무업무는 회장의 책임하에 유급 사무

장이 담당하며 사무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한다.

12-2 사무장은 임원회와 회원총회의 회의록을 기록 정리하고 회장의 확인서명을 받아 보관 관리한다.

12-3 그 외 본회의 회칙에 의하여 보관해야 할 모든 문서와 장부를 관리한다.

제 13 조

임원회

13-1 집행부의 모든 업무는 임원회를 중심으로 책임, 운영, 관리한다.

13-2 구성: 회장, 부회장 (1~2명), 선출된 총무와 재무로 구성한다

13-3 총무와 재무는 회장단이 추천하여 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 임명하며 사무장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용하며 회장단의 필요에 따라 임원의 교체 및 사무장 교체를 하되 반드시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
제 14 조

회장단

14-1 회장단은 회장 1인, 부회장 1~2인으로 구성된다.

14-2 회장의 임무: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전반적인 운영,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책임을 진다. 임원회의를 주관하며 대외적인 협의업무를 관장한다.

14-3 부회장의 임무: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제 1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 제 1 부회장이 대행할 의사가 없거나 대행할 수없는 경우, 제 2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 회장은 필요에 따라 부회장에게 사무국 또는 임원회의의 임무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 15 조

회장(단)의 선거

15-1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선관위):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포함하여 3인-5인을 선출하여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되 이사장이 선관위의 위원장이 된다.

15-2 공고: 선관위는 선거일 최소 30일 전에 선거일과 등록일 및 절차를 공고하여야 하며 회장(단) 선거는 회장선거가 있는 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한다.

15-3 등록: 회장 입후보자는 부회장 1~2인을 러닝메이트로 선거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후보등록을 해야한다.

15-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에 선거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.

15-5 회장단 후보 등록 요건

가. 등록 신청서

나. 회원 3명 이상의 추천서.

다. 이력서

라. 본인의 공약

15-6 선출 방법

가. 등록된 입후보자(또는 팀)가 2인(팀) 이상일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 표를

- 얻은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된다. 투표방법은 비밀투표로 한다.
- 나. 단일 후보(팀)일 경우에는 총회 참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인준된다.
- 다. 후보자가 없거나 단일 후보가 과반수를 못 얻었을 경우 2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.

제 16 조 회장의 임기

- 16-1**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16-2** 회장의 사임 또는 유고 시, 본 회칙 14-2에 의거하여 부회장이 잔여기간 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, 부회장도부재 시는 이사회에서 회장단 대행을 선출하여야 한다.

제 17 조 한인회 인장

- 17-1** 한인회는 '에드먼턴한인회'라는 명칭이 새겨진 인장을 보유하여야 한다.
- 17-2** 각급 정부의 소속기관, 한인회가 구좌를 개설한 은행에 우송하거나 전달하는 모든 문서나 또는 한인회에 법적인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에는 한인회의 인장이 부착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.
- 17-3** 탄핵, 해고, 퇴출을 포함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를 다루는 서한이나 문서에는 한인회의 인장이 부착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.
- 17-4** 위에 밝힌 사항 외의 인장사용은 회장이 결정한다.

제 4 장 이사회

제 18 조 이사회의 업무와 이사의 자격

- 18-1** 이사회의 임무: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본회 회칙에 규정된 설립목적과 운영방침에 따라 회원의 권익신장과 사회, 문화, 친교활동의 지표와 그 실현을 모색하고 그 집행을 집행부가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감시 감독하며 또한 본회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본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.
- 18-2** 이사의 자격: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, 협력하며 본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회원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.

제 19 조 이사회의 구성: 이사회는 최소 15명 최대 21명의 이사로 구성한다.

- 19-1** 선출이사: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로 16명 이내로 구성된다.
- 19-2** 자동이사: 현 한인회장, 전임 한인회장, 노인회장, 여성회장, 실업인 협회장 (5명 이내)
- 19-3** 현 회장과 직전 회장 이외에 부회장이나 임원은 이사가 될 수 없다.

제 20 조

이사의 선출

20-1 회장단, 임원 등 3인 또는 5인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선관위원장이 되며 회장 선거가 없는 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선출한다.

20-2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 21일 전에 선거날짜와 입후보 등록절차를 공고하여야 한다.

20-3 후보등록: 3인 이상의 추천서와 본인의 입후보 승락서를 첨부하여 선거일 8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추천인은 회원자격을 구비한 자여야 하고 1 회원이 1명의 후보자만 추천할 수 있다.

20-4 선거방법: 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한 유효표의 다수 순위로 결정한다.

20-5 임기: 2년이며 회장단과 격년으로 선출하도록 한다.

20-6 이사의 재적수가 어떠한 이유로 21명에 미달할 경우 이사회에서 그 수의 이사를 총원할 수 있다. 이러한 사유로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현 이사회에서 잔여임기로 한다.

제 21 조

이사회 소집, 성원 및 의결사항

21-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. 또한 회장이나 3명 이상의 이사가 이사장에게 요구함으로써 소집될 수도 있다. 회의소집은 이사 전원에게 우편으로 7일 전에 통보하거나 3일 전에 전화로 연락하여야 한다.

21-2 이사회 회의는 정기이사회(년 1회, 매해 2월에 연다)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임시이사회 소집은 필요 시 이사장이 소집한다.

21-3 성원: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되며 특별 결의조항이 없는 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.

21-4 의결권: 다음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가. 결산 및 예산

나. 사업계획안

다. 회칙개정 및 각종 시행규칙의 제정 (단,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)

라. 일정 금액한도를 넘는 예산 항목의 지출 및 차용금의 승인

마. 상벌위원회에서 재청하는 사항

바. 청원서 접수

사. 본회 해산 시 청산업무

아. 집행부로부터 매 분기회계 및 업무 진행보고를 받는다.

자. 회원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항

차. 기타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

제 22 조

이사장

22-1 이사장은 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이사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여 이사회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 통괄한다.

- 22-2 이사장은 간사장과 총무이사를 임명한다.
- 22-3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간사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- 22-4 이사장이 공석이 될 때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새 이사장을 선출한다.

제 23 조

이사직의 사임, 해임

- 23-1 사임: 본인이 이사장에게 사표를 제출함으로 사임된다.
- 23-2 해임: 다음의 경우 자동해임되며 이사장은 이 사실을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고해야 한다.
 - 가. 한인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했을 경우
 - 나. 이사회 사전승락없이 3회 이상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. 사전승락은 반드시 서면이나 이메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 - 다. 정당한 이유로 이사회 사전승락을 받은 경우는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후에도 다시 이사직으로 복귀할 수 있다.
- 23-3 본 회칙의 제 10-2 와 10-3 조항에 의거 이사회 징계심리를 앞두고 있는 이사의 경우, 본인의 징계심리에 관한 참여권 및 투표권이 없으며, 본인의 불참해도 징계투표에 필요한 이사회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는다.

제 5 장 총회

제 24 조

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,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제 25 조
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25-1 정기총회는 매년 2월 말 이전에 개최하며 회원에게 적어도 21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한인신문이나 포스터 또는 한인회 웹사이트를 통해 공고한다. 예산 및 결산 처리를 주목적으로 한다.

25-2 임시총회는 정기총회 외의 모든 총회를 말하며 필요 시 회장 및 이사회의 요청이나 정회원 20인 이상이 요청할 경우 임시총회 소집 요구 이유서와 안건을 첨부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친 후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적어도 21일 전에 '25-1'항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26 조

총회의 정족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, 정회원 100명 이상 혹은 정회원의 20% 이상 출석인원으로 한다. 특별결의를 제외한 모든 의결은 참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
제 27 조

회원의 임무를 다한 자만이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본인 이외의 위임 또는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.

제 28 조

의안의 제출은 회장 또는 정회원의 동의와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.

- 제 29 조**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29-1** 세출입의 예산 및 결산
 - 29-2**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액수 책정
 - 29-3** 회칙 재정 및 개정
 - 29-4** 회장단, 이사, 감사의 선출
 - 29-5** 재산의 구입 및 매각
 - 29-6** 회장 또는 2인 이상의 회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제출된 안건
 - 29-7** 상벌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
 - 29-8**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안건
 - 29-9** 총회의 의사록은 사무장이 기록하며 회장이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 관리한다.

제 6 장 재정

- 제 30 조**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
- 제 31 조** 본회의 수입 원천은 다음과 같다.
- 31-1** 회비
 - 31-2** 특별찬조금 및 기부금
 - 31-3** 본회가 실시하는 각종 행사로부터 얻어지는 수입
 - 31-4** 정부로부터의 각종 보조금
 - 31-5** 기타 수입
- 제 32 조** 매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안 및 결산안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- 제 33 조** 본회의 기금 및 재산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 없이는 어떠한 단체에도 기부하거나 매각 처분할 수 없다. 단, 1만원 미만의 경우 이사회회의 특별결의로 집행할 수도 있다.
- 제 34 조** 본회에 납입된 일체의 기금은 은행에 예치되어야 하며 모든 회계관계 서류는 사무장과 회장 책임하에 항상 기록 보관 관리 되어야 하며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.
- 제 35 조** 본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장단기 차용을 받을 수도 있다.

제 36조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천 불 이상의 경비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집행부는 필요시 추가 갱신예산안을 이사회에 제출 승인 받아 실행할 수 있다.

제 37조 보수 : 어떠한 경우에도 회장단이나 임원 그리고 이사회나 회원 그 누구도 보수를 받을 수 없다. 단, 웹사이트 운영 등 특별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 38조 감사

38-1 감사는 회계감사와 행정감사를 두며 본회의 연말결산 시 회계 및 행정감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필요 시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감사를 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
38-2 임기는 2년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결원 시 그 잔여 기간 동안의 감사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38-3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 다수득표의 순으로 선출한다.

38-4 감사의 사임과 해임은 본 회칙 23조의 이사의 규정에 준한다.

제 7 장 서류 관리 및 열람

제 39 조 본회는 다음의 서류를 회장 감독 하에 사무장이 보관 관리한다. 회계연도 이후 최소 3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련 서류는 정부규정에 따른다.

39-1 회칙 및 시행규칙

39-2 회원명부(회비납부자 명단)

39-3 회의록 (총회, 이사회, 임원회)

39-4 모든 회계관계서류

39-5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중요서류

제 40 조 서류 열람: 회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본회가 보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.

40-1 회원 3명 이상의 서명으로 열람을 원하는 목적과 서류 목록을 포함한 신청서를 회장에게 제출한다.

40-2 열람목적이 합당하면 필요에 따라 담당 부서장과 감사 및 회장단 임회하에 한인회 사무실에서 업무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다. 단, 열람목적이 합당치 않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열람을 거절할 수 있으며 거절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통보한다.

40-3 열람보고서를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 8 장 회칙개정

제 41 조 회칙개정은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의 검토와 수정을 거친 후 최종 개정안을 총회에 특별결의안으로 상정하여 총회 참석 회원 3/4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.

제 42 조 회칙개정안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 21일 이전에 총회에 상정할 한글의 개정요지를 신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지면 공고한다. 단, 필요 시 이사회 결의 또는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할 수 있다.

제 43 조 시행규칙: 회칙 실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는 각종 시행규칙을 제정, 개정 및 공고 후 실시한다. 단, 회칙의 정신에 맞지 않는 시행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.

제 9 장 특별위원회

제 44 조 본회의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44-1 회장은 필요 시 집행부 내에 자문위원이나 특별위원을 위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.

44-2 이사회 내에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 특별위원회의 임무와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 단, 이사회에서는 이에 필요한 세칙을 제정한다.

제 45 조 **상벌위원회:** 이사회 내의 상벌위원회를 구성한다. 교민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공헌한 사람에게 포상하며 반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교민사회에 누를 끼친 사람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. 단, 이사회는 이에 필요한 세칙을 규정 발표한다.

제 10 장 해산 및 청산

제 46 조 본회는 정회원 2/3 출석과 출석인원 3/4 찬성으로 통합 및 해산될 수 있다.

제 47 조 본회 해산시의 청산 업무는 이사회가 총회의 의결을 따라 실시한다.

제 48 조

48-1 모든 부채을 갚고 남은 잔여 자산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본회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단체에 이전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, 본회의 회원 및 개인들에게 분배될 수 없다.

48-2 특별히 주정부 AGLC(Alberta Gaming and Liquor Commission)로부터 받은 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잔여 자산은 AGLC가 지정하는 비영리단체나 자선단체 혹은 종교단체에 기증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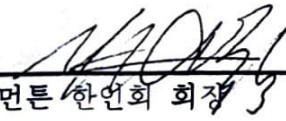
제 11 장 부칙

- 제 49 조 본 개정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집행부는 총회에
서 가결된 개정안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20일 이내에 주정부에 등록을 하여야
한다
- 제 50 조 본 회칙에 적합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법을 따른다.
- 제 51 조 총회에서 통과된 회칙의 내용과 의미에 위배되지 않는 단순한 오류나 영문 번
역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부분을 교정하여
주정부에 등록 회칙을 정정 할 수 있다.
- 제 52 조 어떠한 경우에도 총회에서 위임 참석으로 성원을 구성할 수 없으며, 이사회의
경우는 2인까지 위임할 수 있다. 위임한 이사는 성원 이외에 아무런 결정권을
행사 할 수 없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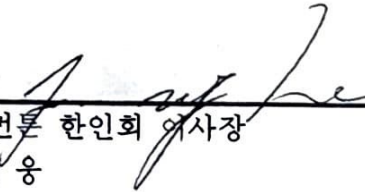
-끝-

Approved By:

Per:


에드먼튼 한인회 회장
조 용 행
Cho Yong Haing

Per:


에드먼튼 한인회 이사장
이 재 응
Lee Jai Ung

